

■ 도선법 시행령 [별표2] <개정 2022. 7. 4.>

승무경력 가산점(제7조제4항 관련)

승무경력	가산점 (필기시험의 총점을 100점으로 할 경우)
1. 6년 이상 7년 미만	1점
2. 7년 이상 8년 미만	2점
3. 8년 이상 9년 미만	3점
4. 9년 이상 10년 미만	4점
5. 10년 이상	5점

비고

총톤수 10만톤 이상인 선박에 선장으로 2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는 2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.